연천군의회 공고 제2022-3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윤리심사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 자율화 부여 (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2월 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0 / FAX: 031-839-2509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발의 의원	연천군의회 의원 임 재 석 외 6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4조----------.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 둔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삭제 >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2022.1.13.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권고안, ' 91.4.)】 –경기도 소통협력과-21078(2021.10.12.)호

주요내용	현행조문	개정조문
윤리특위 설치근거 마련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 삭제 >